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6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 박성훈·안상훈·박대출

고동진 • 박충권 • 이상휘

김성원 • 이헌승 • 조지연

백종헌 · 김승수 · 김대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확대됨.

원자력은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인 전력의 핵심 생산원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원자력발전의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중이므로, 확대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초격차' 제작기술 및 제작시설 확보와 차세대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 특히, 미래 발전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필

요가 있음.

한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 밖에도 문화·콘텐츠 분야에 있어 신성장·원천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이스포츠 산업은 성장세가 꺾여 현재는 국내 개발 이스포츠 전문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대회까지 줄면서 팀은 재정적 부담과 해체, 선수 및 코칭스테프는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 등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산업 규모는 감소하고 산업생태계는 열악한 상황임.

이에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선정된 종목으로 대회를 개최할 경우, 투자·운영에 드는 전반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 활성화를 통한 산업 선순환 및 선수단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구조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성장 · 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여 규

정(안 제10조제1항).

- 나.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안 제24조제1항).
- 다.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안 제25조 의8 신설).
- 라.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현행 특례를 확대(안 제104조의 7 신설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원자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8(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 이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연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 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용료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4조의27(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 경기대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라 한다)를 운영(이스포츠대회의 개최, 지원, 홍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운영 비용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2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27"로 한 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원자력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원자력 연구·인력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원자력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 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중 원자력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 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지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운영 비용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아 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2027년 12월 <u>31일</u>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31일-----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 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오의약품, 원자력---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

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계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

가.·나. (생 략) 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리 다 (원웨리 키스)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

1. (현행과 같음)
2
가
-,
1) (현행과 같음)
2)

다)에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 분의 15(중소기업은 100 분의 25)에 상당하는 금 액

다. (생 략) 3.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u>202</u> 7년	12월	31
일		

나.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8(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연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 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용료 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

<u><신 설></u>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7(이스포츠대회를 운 영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 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u>관한</u>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 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 경기 대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 츠대회"라 한다)를 운영(이스포 츠대회의 개최, 지원, 홍보 등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 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 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 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 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 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 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 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 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 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 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 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 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 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104조의25, 제104조의27
<u>제104조의25</u> , 제104조의27
제104조의25, 제104조의27
<u>제104조의25</u> , 제104조의27
<u>제104조의25</u> , 제104조의27
제104조의25, 제104조의27
제104조의25, 제104조의27
제104조의25, 제104조의27
<u>제104조의25</u> , 제104조의27
<u>제104조의25</u> , 제104조의27
제104조의25, 제104조의27
제104조의25, 제104조의27

③ 제1하에 따르 으여 비요이

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 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u>제1</u> 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 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

2
<u>제1</u>
04조의25, 제104조의27

6소의6, 제126소의7제8항 및 법
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
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
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
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
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